

의안번호	2201907
의 퇴 인	송재봉 의원
회 답 일	2024.08.14.
추 계 번호	24C2118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국적’의 차별없이 보육 지원을 받게되어 ‘재외국민과 외국인’ 영유아에게 부모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45억원, 2030년 830억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828억원(연평균 766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개정안 전체에 대한 재정소요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안 제34조의8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 0~2세 반 부모보육료)	국비	517	508	515	541	576	2,657	531
	지방비	228	224	227	238	254	1,171	234
	합계	745	732	741	779	830	3,828	766

- 주: 1) '23.12 기준 국내체류 외국국적 영유아 수가 각 세별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기간 동안 장래인구추계(통계청) 중 연도별 각 세별 인구수에 적용한 후 이에 다시 연령반별 어린이집 이용률 적용하여 아동수 추정
2) 외국국적 영유아에게 이미 지원되고 있는 기관보육료,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제외한 ‘부모보육료’에 대한 추계값이며,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 실시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동 지원금이 전액 개정안에 따른 보육료 지원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3) 개정안 시행 후 외국국적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로 부모보육료 외에 기관보육료 등 관련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증가폭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23년 12월 기준 외국국적 영유아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이용률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4) 부모보육료 단가는 '24년 각 세별 지원 단가에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5) 개정안 시행 후 국내체류 외국국적 영유아수 및 해당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 지원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조 (보육 이념)	(제3항)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국적,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34조의8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3조 (보육 이념)	×	·개정안은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이는 선언적·권고적 규정으로 관련 재정수요 추정에 한계가 있음
2	안 제34조의8 (재외국민과 외국인에 대한 지원)	○	(무상보육) '24년 현재 ‘기관보육료,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보육교사 인건비’는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0~2세아동 대상 부모보육료’에 대하여 추계
		×	(양육수당) 국내체류 외국국적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할 경우 추가재정이 소요될 수 있으나, 해당 아동이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확률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추계에서 제외함 ¹⁾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비용추계는 국내에 체류하는 0~2세반 외국국적 아동에게 부모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개정안의 ‘재외국민’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및 「주민등록법」 등에 따른 ‘재외국민’으로 볼 경우, ‘국내체류 재외국민’은 이미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므로²⁾³⁾ 본 추계서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사업대상으로 새로 포함되는 이를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보유 영유아’로 봄
 -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소 제출자료에 따른 2023년 12월 기준 국내 외국국적 영유아 수를 기준으로 추계하며,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중 각 세별 영유아 수 대비 국내체류 외국국적 영유아수 비율이 추계기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함
 - 합법 체류 외국인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이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하며 90일 미

1) 양육수당은 국외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 24개월 이상 아동 중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교육지원을 받지않는 취학 전 아동에게 지원되고 있음
 2) 2024년도 보육사업안내 참조
 3) 재외국민 출국자는 제외됨

만 단기체류 아동은 제외함⁴⁾

- 국내체류 외국국적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 관련 통계가 부재하여, '23년 12월 기준 연령별 어린이집 전체 이용률을 적용⁵⁾
- 교육부에 따르면 2024년 현재 '기관보육료⁶⁾, 누리과정 운영지원비⁷⁾, 보육교사 인건비⁸⁾'는 아동의 국적과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본 추계서에 서는 '0~2세반 아동에 대한 부모보육료'에 대하여 추계함⁹⁾
 - 부모보육료 단가는 2024년 현재 지원 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추계함
 - 부모보육료에 대한 2024년 국고보조율 69.4%를 적용하여 국가가 69.4%와 지방이 30.6%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추계기간 동안 동 비율이 유지된다고 가정
 -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도별 기준 등이 상이하여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값을 산출하며, 해당 지원금이 전액 개정안에 따른 보육료 지원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 내·외국인 구별 통계 부재로 실제 외국국적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률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외국국적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로 부모보육료 및 기관보육료 등 관련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증가폭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23년 12월 기준 아동수를 기준으로 추계함

□ 국회 심의기간 및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법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추계연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4)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자료 분류에 따름

5) '23.12.기준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반 25.7%, 1세반은 89.2%, 2세반은 94.3%임(자료: 교육부)

6) 0~2세반 아동을 보육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

7) 3~5세반 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지원하며 누리과정 자격 아동 1인당 7.8만원 수준임

8)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등 보육교사 인건비의 30~80%를 보조

9) 3~5세반 아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중 기관을 선택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률적으로 이용률을 가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추계가 곤란함.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215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소관 조례를 통해 외국인 유아에 대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음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내체류 외국국적 0~2세 영유아의 수(추정)에 월별 부모보육료 단가 및 개월수를 곱하여 추계

- 정책 대상 수는 전제에서 가정한 것과 같이 '23년 12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국적 각 세별 영유아수가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중 각 세별 영유아수에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뒤 동 비율을 추계기간동안 각 세별 영유아수에 적용하고 이에 다시 연령반별 어린이집 이용률을 적용하여 도출
 - 국내 체류 외국국적 영유아 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제출자료('23.12.기준) 활용
 - 불법체류 외국인과 90일 미만 단기체류 외국인은 제외
 - 참고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는 대한민국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내·외국인이 포함됨

[표 2] 연령별 국내체류 외국국적 영유아 중 어린이집 이용 아동수(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0세	1,193	1,252	1,308	1,359	1,403
1세	1,340	1,340	1,406	1,468	1,525
2세	4,825	4,578	4,575	4,801	5,014
3세	5,805	5,445	5,167	5,165	5,419

주: '23.12 기준 국내체류 외국국적 영유아 수가 각 세별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기간 동안 장래인구추계(통계청)의 연도별 각 세별 인구수에 적용한 후 이에 연령반별 어린이집 이용률을 곱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월 지원 단가는 '24년 기준 부모보육료에 국회예산정책처 추정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도출하고, 지원 개월수는 12개월로 함
 - '24년 기준 부모보육료는 0세반(0·1세) 54만원, 1세반(2세) 47.5만원, 2세반(3세) 39.4만원임

[표 3] 연령별 연간 부모보육료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2026	2027	2028	2029	2030
0세반(0·1세)	6,768	6,910	7,056	7,204	7,348
1세반(2세)	5,954	6,079	6,206	6,337	6,463
2세반(3세)	4,938	5,042	5,148	5,256	5,361

주: 연령반별 월별 부모보육료 지원액에 12개월을 곱한 값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이에 국내체류 외국국적 0~2세 영유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수 (추정)에 월 지원 부모보육료 단가와 지원 개월수(12개월)를 곱하여 추정한 부모보육료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745억 3,900만원, 2030년 829억 8,200만원 등 5년간(2026~2030년) 총 3,827억 8,400만원(연평균 765억 5,700만원)으로 추계

[표 5] (추가재정소요) 국내체류 외국국적 아동에 대한 부모보육료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0세반(0·1세)	17,144	17,907	19,145	20,365	21,520
1세반(2세)	28,725	27,827	28,396	30,424	32,408
2세반(3세)	28,669	27,455	26,600	27,145	29,054
합 계	74,538	73,189	74,141	77,934	82,982

- 주: 1) '23.12 기준 국내체류 외국국적 영유아 수가 각 세별 인구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추계기간 동안 장래인구추계(통계청) 중 연도별 각 세별 인구수에 적용한 후 이에 다시 연령반별 어린이집 이용률을 적용하여 아동수 추정
2) 외국국적 영유아에게 이미 지원되고 있는 기관보육료, 누리과정 운영지원비, 보육교사 인건비 등을 제외한 '부모보육료'에 대한 추계값이며, 일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 기 실시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동 지원금이 전액 개정안에 따른 보육료 지원으로 사용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감소할 수 있음
3) 개정안 시행 후 외국국적 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증가로 부모보육료 외에 기관보육료 등 관련 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증가폭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23년 12월 기준 외국국적 영유아 통계를 사용하였으며, 이용률이 증가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증가할 수 있음
4) 부모보육료 단가는 '24년 각 세별 지원 단가에 추계기간 동안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5) 개정안 시행 후 국내체류 외국국적 영유아수 및 해당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 지원 단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국내체류 외국국적 영유아수 및 해당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률, 지원 단가, 기존 시·도교육청 지원금의 편입여부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